

특별임용교원 자격조건

구분	자격조건
객원교수	<p>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의 특정영역에서 업적이 있는 자로 하며, 본 대학교와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협약 또는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학생교육과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</p>
겸임교수	<p>학생교육을 위하여 공공기관,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진 자</p> <p>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1호와 대학설립·운영규정 제6조 제4항 및 대학설립 운영규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'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'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②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(본직)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교원 ③ 원소속(본직)기관에서 정규직원*으로 상시(유사경력 3년 이상)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규직원은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'기간제 근로자'로 '단시간근로자'가 아닌 직원을 의미 ④ 겸임교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·실험·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